

# 2007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방안

사업개발팀차장대우정진형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의 광우병 발생, 젖소·수입육의 한우둔감판매등과대식탁안전이 크게 위협받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졌고, 소비의 기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도 태동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를 200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04년 10월부터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참여대상은 9개 우수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4만두 규모가 관여했으며, 매년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06년 말 기준으로 사육단계에서는 20개 브랜드경영체, 3개 지역단위에서 210천두의 소가 이력추적관리 되고 있고, 이와 연계된 유통단계 사업장인 도축장 21개소, 가공장 24개소, 판매장 93개소에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도에도 시범사업의 마지막 해이자, 2008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사업 착수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말 2007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① 참여대상을 브랜드경영체 위주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했으며, ② 추진체계에서는 시도에 종괄적 권한을 부여하였고, ③ 유통단계에서 실시하던 DNA검사를 사육단계에서도 시범실시 하게 되며, ④ 도축단계에서 가공장을 거쳐야만 판매장으로

로 연계되는 정보흐름을 가공장을 거치지 않고도 판매장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였다. ⑤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확대하여 육우 2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서도 참여토록 하였다. 이러한 개편된 체계를 중심으로 2007년 사업추진방안 및 세부실시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년에 신규로 참여하는 대상으로는 시도 1개소(경기도 전체, 육우브랜드 2개소)와 충북(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충남(천안시, 홍성군, 논산시), 전북(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완주군, 익산시), 전남(나주시, 부안군, 영암군, 담양군, 강진군), 경북(의성군), 경남(진주시, 의령군, 기장군), 제주시 등과 기존 23개 브랜드 및 지자체에서 650천두 규모가 관여하게 된다. 이들 참여대상에 대한 사육단계 착수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며 참여대상 지자체 등에서는 참여농가 등록 및 미부착우에 대한 귀표장착, 기준소 신고, 출생신고, 이동(전·출입, 폐사신고)사항을 신고 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도축장에서는 귀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도축신고, 가공장과 판매장에서는 개체식별 표시 후 판매를 실시해야 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농림부축산물위생과)에서는 사업계획수립및추진점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제정 등을 실시하게 되고, 시·도(시·군)에서는 지도감독(예산집행, 사육단계 개체관리대행기관 선정, 사육단계 DNA감시기관 선정)을 하고, 사업의 시행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전산 DB 및 유통단계 관리, DNA동일성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고, 농협중앙회에

서는 귀표관리 및 사육단계 지도점검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조합, 관련협회, 브랜드 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사육단계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개체관리비 지원, 도축장은 라벨프린터 및 리너기, 판매장은 전자저울, 사육단계 DNA분석기관에 대해서는 DNA 분석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 각 단계 주요추진 내용

#### ■ 사육단계 : 귀표의 배포와 장착

2007년도 신규참여 대상에 대한 귀표부착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모형과 같은 귀표를 제작 배포하게 되며 사육농가에서는 소의 양쪽 귀에 개편된 15자리 국가공식귀표를 부착해야 한다<예시, KOR-002-123456789>. 단, 기존 축산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기존9자리 귀표가 부착된것은 예외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한번 장착한 귀표가 떨어질 경우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일한 번호를정부에서매부한닌이표(농림부엠블럼과국가표시가됨)에 기재하여 재장착하여야한다.



<좌측 귀 : 일반형>

<우측 귀 : 단추형>

<민이표>

#### ■ 도축단계 신고

도축을 의뢰한 의뢰인 등은 도축장에 비치된 도축두수 및 귀표번호 통보서 서식을 작성하여 도축의뢰시 도축장경영자에게 도축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하며, 도축장경영자는도축할소의이력을전산

조회하여 해당 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도축의뢰인 등이제출한종하내역을입력하고, 도축후개체식별번호 및 도축일 등을 이력제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가공장을 경유하지 않고 판매장으로 직육을 반출할 경우 도축장경영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해당 판매업소 대표성명, 상호, 사업자번호를신고해야한다.

#### ■ 가공단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식육포장처리 영업자)는 부분육(성육)의 포장지에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준력하여 부착하고 부분육을 반출(판매) 하고자하는축산물가공업영업자(식육포장처리 영업자)는 시행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해당 판매업소 대표성명, 상호, 사업자번호를신고해야한다.

#### ■ 판매단계

이력적용 지정판매장에서는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포장지등에표시하이판매해야하며, 소비자가 쇠고기의 개체이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이나 인터넷 및 이력정보게시판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이력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이 없는 판매장의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에 의해 발급된 「도체 반출결과 확인서」 또는 가공장영업자가 발급하는 「부분육 반출결과 확인서」를 비치하여소비자에게쇠고기이력을제공하닌된다.

#### ■ DNA동일성 검사

유통단계에서DNA동일성검사는 예년과같이동일하게 실시되며, 금년부터는 한우의 형질개량, 귀표의 위·변조 근본방지 등을 위해 사육단계 귀표 부착시 모근, 혈액, 조직 등을 이용하여 DNA지문을 검사하여 D/B하는사육단계DNA검사를실시할계획이다.